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0가합512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박찬주, 권창호, 서정욱

피고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창교

2. B

변론 종결2024. 9. 12.

판결 선고2024. 11. 14.

주 문

1. 가. 피고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2번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3. 15.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순번 2번 기재 공탁금에 대한 피고 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위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각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① 피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2. 1.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 주식회사 A는 별지 2 목록 순번 1, 2번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위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C(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2014. 10. 20. D은행(대출금액 80,000,000원, 보증금액 68,000,000원) 및 2015. 6. 29., 2015. 7. 8. E은행(각 대출금액 110,000,000원 및 300,000,000원, 각 보증금액 99,000,000원 및 270,000,000원)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를 보증하였다(각 보증기간 1년, 다만 2015. 7. 8.자 E은행 대출의 경우 보증기한 2023. 7. 7.).

나. 이후 원고는 위 보증기간을 1년씩 연장하여 왔는데, 주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해 2019. 2. 8.(E은행의 2015. 7. 8.자 대출), 2019. 2. 26.(D은행의 대출), 2019. 3. 14.(E은행의 2015. 6. 29.자 대출) 각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D은행은 2019. 3. 26., E은행은 2019. 3. 8. 및 2019. 3. 14. 각각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은행들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5. 21. E은행에 341,303,896원, 2019. 6. 11. D은행에 59,076,248원을 각각 변제한 후 1,098,690원을 회수하였다.

다. 주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2.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하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게 주채무자가 F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9. 3. 29. 이를 F에

통지하였고, 2019. 3. 15. 피고 B에게 주채무자가 F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1 목록 순번 2번 기재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이를 F에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이후 F는 2019.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9195호로 주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76,231,502원을 변제(피공탁자: G, H, I, J, 피고 A) 및 집행 공탁하였고, 201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 17761호로 132,178,303원을 추가로 변제 공탁(피공탁자: G, H, I, J, K, 피고 A, 피고 B)하였다(이하 위 각 공탁금을 통틀어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한편 주채무자는 2019. 4. 9.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9. 5.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대구지방법원 2019회합115호), 2020. 1. 21.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제1, 2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주채무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주채무자가 적극재산인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인 이 사건 제1, 2 채권을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들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최초의 보증사고가 2019. 2. 8.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주채무자는 이미 이 사건 제1, 2 채권의 양도가 주채무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 A의 항변에 관하여

1) 을마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레이저가공, 산업기계작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 A는 2017. 6.경부터 TV브라운관 뒷면 백라이트 부품 등을 제작하는 회사인 주채무자로부터 디스플레이 기구물 등의 자재 가공을 발주받아 이를 공급한 사실, 2018. 11.경 기준 피고 A의 주채무자에 대한 미수금은 8,703,244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 A와 주채무자는 2018. 12. 27. 새로운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는 그에 따라 2018. 12. 15.부터 2019. 2. 25.까지 주채무자에 합계 154,497,623원 상당의 물품을 다시 공급한 사실, 피고 A는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19. 6. 28.에도 주채무자에게 10,812,7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2. 1.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 A는 실제로 주채무자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던 하청업체로, 피고 A의 내부 사정일 뿐인 무자력 여부에 대해서는 쉽사리 알기 어렵고 실제 주채무자는 2018.

11.경까지는 피고 A에게 대부분의 물품대금을 지급해 왔던 점, ② 피고 A가 2018. 12. 27. 주채무자와 새로이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채권 양도일인 2019. 2. 1. 이후이자 최초의 보증사고 발생일인 2019. 2. 8. 이후인 2019. 2. 25.까지도 물품을 공급한 점, ③ 피고 A가 주채무자로부터 담보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게 된 것은 기왕에 공급되었던 물품에 대한 미수금 채무 때문이 아니라 새롭게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채무자와의 거래규모를 확대할 예정이었기 때문인 점, ④ 나아가 피고 A는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19. 6. 28.에도 주채무자에게 10,812,7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점, ⑤ 위와 같은 지속적인 물품 공급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당시 주채무자가 외형상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하고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피고 A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지속적인 사업수행에 의심을 품었다면 그와 같은 거래 확대나 지속적인 물품 공급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A는 2019. 2. 1. 당시

주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몰랐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채권의 양도가 주채무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역시 몰랐다고 판단된다(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 A의 항변을 받아들임).

3)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B의 항변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2019. 3. 15. 이 사건 제2 채권을 양수받을 당시 선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사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8. 25.

주채무자에게 700,000,000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 2019. 8.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주채무자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주채무자는 지연되고 있는 물품대금을 입금 받으면 이를 지급하겠다고 하며 그 변제를 지연한 사실, 피고 B의 거듭된 최고에 결국 주채무자가 2019. 3.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 역시 주채무자가 2019. 3. 15.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을 잘 알고 자신의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주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잘 알면서도 이들보다 먼저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채권을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 B과 주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제2 채권에 관하여 2019. 3. 1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자신이 피공탁자로 가지는 별지 2 목록 순번 2번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위 3.라.항에서 인정한 것처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우영식

판사김준우

별지